##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373 제출연월일: 2024. 7. 30.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 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85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95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0호),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0호), 「도로법

안」(의안번호 제230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호) 및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호)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제13호의2, 제22호, 제24호, 제27호,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8호, 제44호 및 제5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71호, 제72호, 제75호, 제78호, 제80호, 제88호, 제91호 및 제92호를 각각 삭제한다.

7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